

청주교육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4. 5. 27. 규칙 제1345호

개정 2014. 10. 29. 규칙 제1358호

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19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교육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 ①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5.11.)

②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5.11.)

제3조 (기능) 교양교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의 연구 · 개발
2.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· 평가
3. 기타 교양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 (위원회)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운영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담교수를 포함한 우리대학 전임교원 8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5.11.)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교무처 수업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·행정사항 집행·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. (개정 2020.5.11.)

제6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육과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양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 시행한다.